

보도자료

2011년 12월 29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와이브로활성화팀 김경만 팀장(☎750-2540)
와이브로활성화팀 조병현 사무관(☎750-2541) 224e6970@kcc.go.kr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이젠,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매년 요금감면 자격 유지를 위해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및 이동통신 3사의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자격 확인을 On-Line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①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이외에 ②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③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장소)을 다양화했으며,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자격 갱신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사람(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 경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서류 제출을 통해 요금감면 및 매년 자격 갱신을 해야 함

※ LGU+는 계열사 합병에 따른 「유·무선 고객관리시스템 통합작업」으로 '12. 4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전('12.1~3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서류 제출을 통해 요금감면 및 자격 갱신을 해야 함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신청 방법의 경우, 이동전화는 '09년 8월, 유선전화는 '10년 4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설명 참고자료 1부.
2.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한 신청방법 1부.
3.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및 기준 1부. 끝.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설명 참고자료

□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전·후 비교표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신청 서류	○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서류를 제출 - 매년 관련 서류제출	○ 별도 자격서류 제출없이 신분증만으로 감면신청 및 확인 - 매년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 장소	○ 이통사 대리점 내방	○ 이통사 대리점 내방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내방 ○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장소)별 감면 자격확인 정보연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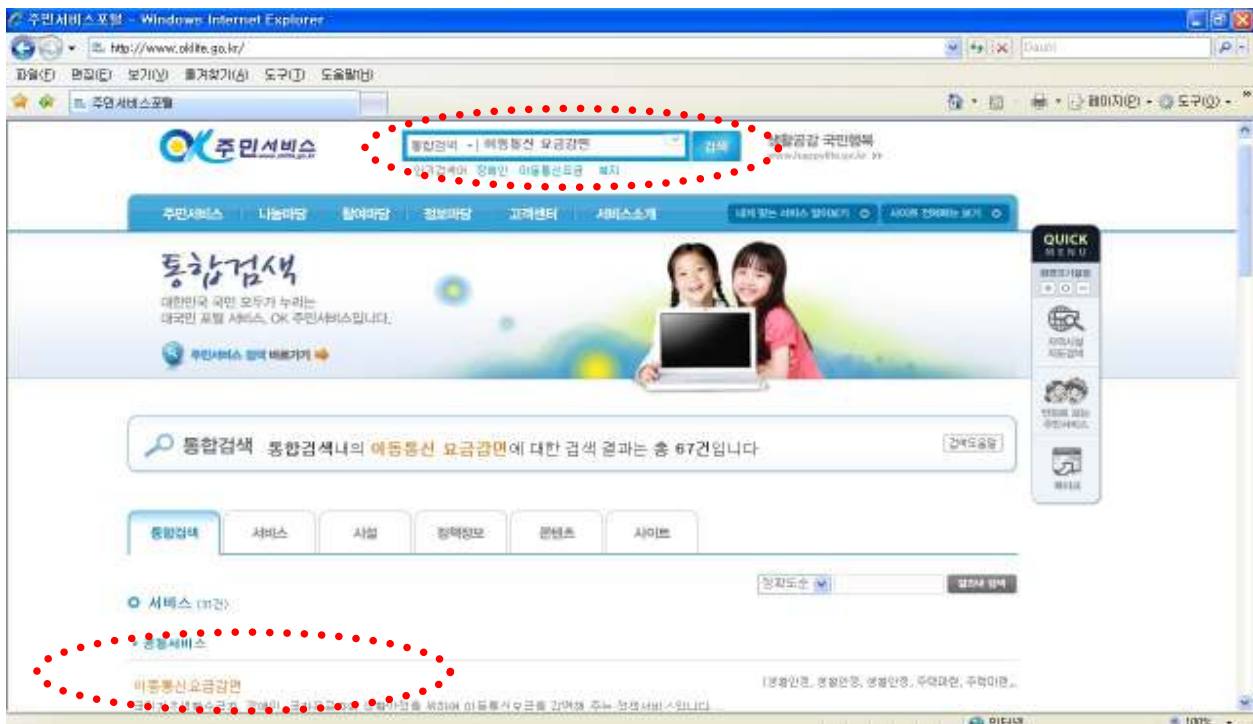
< 붙임#2 >

주민서비스 포털을 통한 신청방법

- ①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수행



- ② 통합검색 메뉴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Click 하고 공통서비스에 붉은색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나타나면 해당 붉은색 글자를 마우스로 Click



③ 서비스 신청 탭을 선택한 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Citizen Service Portal in Internet Explorer. The '서비스 신청' (Service Application) tab is active. The form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 이름 (Name): 김민우
-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700301 - 00000
- 전화번호 (Phone Number): 10 - 8264 - 1234
- 휴대폰번호 (Mobile Phone Number): 010 - 4252 - 3187
- 주소 (Address): 서울 관악구 삼성동 삼성산우동아파트 302호 302호
- 이메일 (Email): [Blank] @ [Blank].[Blank]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red dotted line around the '신청' (Apply) button.

④ 차상위 자격검증 후 우측 하단의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주민서비스 포털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이 완료

○ 서비스정보

신청서비스	☒ 무선(이동)전화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 시군구
대상자유형	차상위 자격검증
이동전화 통신사	선택

- 요금감면 할인 서비스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해당 기관이 [전자정부]를 통해 직접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향후 할인대상자 신분 변동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관이 [전자정부]를 통한 본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데 대하여도 동의합니다.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지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할인 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해당 기관에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및 기준

○ 요금감면 대상자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③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④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 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
- ⑦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 ”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2. 1~2월중)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

○ 요금감면 기준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